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2008	~	40
----------	------	---	----

제출연월일		일일	2008. 10. 2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체결된 한국폴리텍WI대학 거창캠퍼스 무상 양도·양수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,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승강기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한국폴리텍VII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
 -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
- 대학은 군 출연재산에 대해 교육용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관리
- 다. 대학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
- 라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 -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,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, 필요한 경우 수시 제출
- 마. 출연재산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 - 군비 출연과 관련한 운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의 검사 실시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제4조부터 제7조까지,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8조 및 제40조

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(15억원)

다. 합 의: 재무과 재산관리담당

라. 그 밖에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(2) 입법예고(2008. 9. 23 ~ 10. 2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,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승강기산업"이란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생산·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3. "기술혁신지원기관"이란 승강기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,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, 대학, 민간연구소를 말한다.
- 4. "산·학·연·관 협력"이란 기업, 대학, 기술혁신지원기관, 도, 군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교육용 기본재산"이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·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, 교지, 교원을 말한다.
- 제3조(재산출연 등)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한국폴리텍VII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 한다.
 - ② 군수는 대학으로 하여금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9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 - 1.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, 훈련 및 양성
 - 2. 승강기산업 기술연구장비 · 시설의 확충 및 활용 촉진
 - 3. 승강기산업 연관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
 - 4. 산·학·연·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

- 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「대학설립· 운영 규정」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군수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대학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- 제5조(사업계획과 예산) ① 대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제출할 수 있다.
- 제6조(보고 및 검사) ① 군수는 출연금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출연과 관련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